

WTO/DDA 협상동향과 전망

박 민 규

인 하 대 학 교

W T O

DDA 협상

협상의제

- 시장개방 관련 의제
 - > 농업, 서비스, 비농산물(공산품, 수산물)
- 규범 관련 의제
 - > 기존 협정 개정
 - ✓ 규범 : 반덤핑, 보조금/수산보조금, 지역협정,
 - ✓ 분쟁해결
 - > 신규범 제정
 - ✓ 투자, 경쟁정책, 무역원활화, 정부조달 투명성
- 기 타 : 환경, 지적재산권
-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

협상경과

- 2002.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
 - > 농업, 서비스, 비농산물, 규범, 환경, 지재권, 분쟁해결
 - > 개발, 투자, 경쟁정책, 무역원활화,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
- 2002.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
- 주요 협상시한 준수 실패로 협상이 고착상태에 봉착 2002년말 시한인 개도국 우대 조항 검토 및 의약품 공급 문제 등 개도국 관심사항 타결 실패
 - >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의 협상 세부원칙(modalities) 수립시한 (각각 2003.3월말,5월말)에 합의 도출 실패
 - > 2003.7 몬트리올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의 돌파구 마련 미국과 EU간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기본골격(framework) 합의

협상경과(2)

- 2003년9월 제5차 WTO 각료회의(9.10~14, 멕시코 칸쿤)
 - 협상 진전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
 - 농업,비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한 세부원칙의 기본골격 수립 및 싱가포르 이슈의 세부원칙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나, 합의 실패
- 2004.2월 각 협상그룹별 의장을 선임, 협상재개
 - 2004.7월 Framework 합의
- 2005.7월 비농산물 협상 Modality 합의 예정
- 제6차 WTO 각료회의(홍콩, '05.12월) 예정

MARKET ACCESS



비농산물 시장접근

- 도하각료선언 16항 및 31항의 mandate에 따라 2002년 초 협상 개시
 - ▷ 모든 비농산물(without a priori exclusions)
 - ▷ 관세 및 비관세장벽감축 또는 철폐
 - ▷ 관세정점, 고관세, 관세누진의 해소
 - ▷ 개도국 이익 특별 고려
 - ▷ 환경상품 교역 자유화

주요작업일정

- 2002년도는 절차문제로 상반기 작업지연, 하반기에 4차례 회의 개최
- 2003년도 5차례(2월, 4월, 5월, 7월, 8월) 회의 개최
- 2003.5.31까지 협상 세부원칙 합의 예정이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 차이로 합의 실패
- 2003.9.10~14간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시 세부원칙의 골격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 차이로 실패

협상목표 및 방식

- UR협상결과(평균관세 33% 감축)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설정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
- 양허품목 확대
 - 양허품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 형성
 - 일부 국가는 신규양허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면제 또는 인하폭 차등화 주장
- 공식적용방식(formula approach) + α (R/O방식, 분야별 접근방식)에 대체로 공감대 형성
 - 우리나라 입장 : 공식적용방식 원칙
 - R/O, 분야별 접근방식은 필요시 예외적 적용

관세인하방식

-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의장안, 의장 수정안, 그리고 미국, EC, 캐나다 3개국 공동제안을 중심으로 논의
 - 의장안은 각국 평균 관세율에 따라 관세상한이 달라지는 변형된 스위스 공식
 - 의장수정안은 각국 평균 관세율 계산시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평균을 사용하고 평균관세율에 상한선 적용
 - 선진 3개국안은 모든 회원국에 하나의 계수를 적용, 동일한 관세상한을 갖게 하는 원형 스위스 공식
- 선진국은 모든 국가에 대한 동일한 공식 계수(coefficient) 적용과 의무적인 분야별 무세화 참여를 주장한 반면, 개도국은 회원국간 차별화된 계수 적용과 자발적인 분야별 무세화 참여를 주장

관세인하방식

- 2003. 8.24 배포된 각료회의 문서 초안은 위와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양극화된 입장을 최대한 균형있게 반영하여 비농산물 협상 세 부원칙의 기본골격을 제시
 - ▷ 관세감축공식은 비선형인하방식(non-linear cut :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인하폭이 커지는 공식)
 - ▷ 분야별 자유화는 모든 회원국의 참여가 중요
- 이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, 칸쿤 각료회의 이전에 사실상 합의 도출은 실패

무세화

- 일본, 캐나다, 미국, 스위스 등 구체적 품목 제시
 - ▷ IT, 수산물, 비철금속, 비료, 자전거, 자동차, 사진기, 시계, 완구류, 철강제품, 필름, 광학기기, 의약품 등
- 우리는 무세화 분야는 모든 회원국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분야로 국한 주장
 - ▷ 현단계에서 각국의 관심분야별 무세화 제안 자제 촉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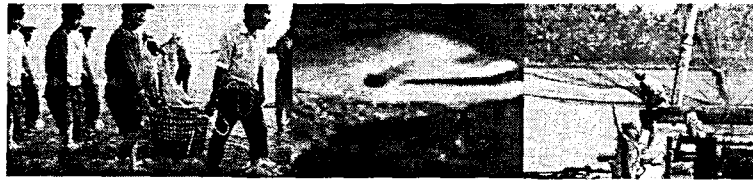
최근 협상 동향

- '05. 7월중 Modality 초안 합의도출 목표
 - ▶ 스위스 공식중심으로 협상이 본격화
 - ▶ 개도국의 특혜 제안으로 논란 가속
- 주요 논의 대상
 - ▶ 무세화 관련 대상분야 선정 및 참여방식
 - ▶ 관세인하 공식 채택 등
- 홍콩 각료회의('05.12)에서 협상타결 시도

영향 및 대책

- 교역증대 특히 수입 대폭 증대 예상
 - ▶ 주요 수출국에서의 경쟁 심화
- 기회 & 위기
 - ▶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
 - ▶ 중국 및 일본시장 개방
- 대책
 - ▶ 고급화/브랜드화
 - ▶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틈새시장 개발
 - ▶ 위생 및 표준제도 확립
 - ✓ 선진국의 위생 및 안전 기준 엄격 적용
 - ✓ 합법적인 통제장치
 - ▶ 통상분쟁에 대비

FISHERY SUBSIDIES



What's the problem?

- Worldwide, fishing subsidies total roughly 20 percent of industry revenue
 - > Total value of commercial wild-capture marine fisheries : US\$80 billion
 - > Subsidies : US\$15 billion per year.
- Subsidies intensify many of the problems at the root of the worldwide fisheries crisis
 - > Subsidies are a fundamental driver of overcapacity.
 - > Subsidies encourage unsustainable levels of fishing effort.
 - > Subsidies exacerbate IUU fishing.
- The majority of fishing subsidies are granted by a small number of countries
 - > seven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accounted for more than 90 percent of all officially reported fishing subsidies.
 - > Japan, EC, United States, Canada, Russia, Korea, and Chinese Taipei
- Developing countries are particularly disadvantaged : biased
- Nearly all fishing subsidies programs lack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

TOO MANY FISHING BOAT
CHASING TOO FEW FISH

SCM 협정상의 보조금 정의

-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
 - ▶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(무상지원, 대출 및 지분참여),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(대출보증)을 수반하는 경우
 - ▶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(세액 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)
 - ▶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할 경우
 - ▶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에 예시된 기능의 유형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,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,
- 1994년도 GATT 제16조의 의미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,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

특정성

- 특정성 존재
 - ▷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
 - ✓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,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,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
 - ▷ 공여기관의 관할지역중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라는 특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
 - ▷ 금지보조금
- 특정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
 - ▷ 보조금의 수혜요건 및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설정하고, 수혜요건이 자동적,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
 - ✓ 기준 및 조건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, 규정 또는 그 밖의 공식문서에 명백하게 규정 필요
 - ▷ 권한이 있는 각급 정부에 의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의 설정 또는 변경

금지보조금(red right)

•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
 •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(use)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



지급 또는 유지 금지

수산보조금에 대한 제한적 적용

- Fishing subsidies are rarely “export” subsidies
 - ▷ the majority of fishing subsidies are granted by countries that are net importers of fish.
- 신선도 등의 영향으로 국내상품 선호

조치가능 보조금(amber light)

- 부정적인 효과(Adverse Effects)
 - >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(injury)
 - >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(Nullification or Impairment)
 - >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(serious prejudice)

- 상품에 대한 증가기준 총 보조금 지급이 5%를 초과
- 특정 산업(기업)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
- 직접적인 채무감면, 즉 정부보유채무의 면제 및 채무상환을 위한 교부금

수산보조금에의 적용

- 부정적인 효과 적용 곤란
 - > distort the access to production rather than the access to export markets
- 단위 노력 생산량(yield per unit effort)의 변화 입증의 곤란
 - > 가격 및 시장 점유율 계산, 자료확보 곤란
- 정치적 자제와 수산업의 규모
 - > 피해국이 개도국 또는 도서국가

허용 보조금(green light)

-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이러한 지원이 산업적 연구 비용 75%, 경쟁전 개발활동 비용 50% 미만
- 지역개발의 일반적인 틀에 따라 회원국 영토내의 낙후지역에 제공되는 지원이며 수혜대상 지역내에서 특정적이지 아니한 지원
- 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제약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법 및/또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설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(감척, 재교육, green for brown)

- WWF의 수산보조금 협상안
- Healthy Fisheries, Sustainable Trade
 - > CRAFTING NEW RULES ON FISHING SUBSIDIES in the WTO



WWF 수산보조금의 정의

- 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상업적 이익을 부여하는 모든 보조금
 - 어업인에게 직접 주는 보조금이 아닌 수산업계의 이익을 위한 모든 정부의 재정적 기여 포함
 - ✓ 정부간 지급하는 EEZ 입어료
 - 국내조업뿐만 아니라 공해조업 포함
 - 수산업에는 모든 야생 포획 수산업 포함
 - 어항, 가공업, 운송업, 판매업, 기타 행위자 지원은 수산업계에만 이익 주는 경우 보조금으로 간주

공공 수산 관리 서비스는 수산보조금 범위에서 제외

금지보조금(red light)

- 어획 능력 또는 노력 증강 또는 유지 보조금
 - 어선건조 및 수리
 - 어선 현대화 및 장비구입/성능향상
 - 수산업 분야 고용유지
 - 합작사업 등을 통한 해외 및 공해어업의 어획
 - 해외 수산자원 입어
 - 수산기술의 조사 및 개발/수산업 경영 보조
 - 연료 보조금
 - 미끼 또는 얼음 등의 공급
 - 해상보험 보조/운영비용 보조
 - 선주에 대한 해외당국에 의해 부과된 벌금 또는 몰수금 상환 약속
- IUU 기여 어업(Illegal, Unreported, Unregulated)
- 국내 수산물 공급 수준 유지 또는 증가 위한 국내 어업인 지원 가격 지지 보조금



금지 예외

- 단기 비상구제 및 조정
 - ▷ 수산자원 보존조치 또는 자연재해
- 특정 입어료
 - ▷ 수산업이 명백하게 위험에 처하거나 관리가 부실하지 않고 국내 법과 국제법을 준수
- 소규모 생계형 어업
 - ▷ exclusively in developing-country fisheries that are not “patently at risk” or “patently undermanaged.”
- 금지예외 전제조건 및 제한
 - ▷ IUU 어업활동에 대한 예외 불허
 - ▷ WTO 사전통보 규정 충족의 경우 예외 허용
 - ▷ FAO의 어획능력계획관리 계획에 따르는 경우 예외허용
 - ▷ SCM 금지 충족
 - ✓ 수출 및 국내 공급 보조금
 - ▷ 예외의 경우에도 현행 SCM 협정 5-6조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가 등
 - ▷ 비상구제보조금 특별규제
 - ▷ 모든 예외 보조금은 특별 보고 요건 충족 및 주기적 점검

허용보조금(green light)

- 수산관리와 자원관리, 해양자원과 생태계를 보호 및 보전하기 위한 장비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활동(자료수집)
- 환경 친화 어구(fishing gear) 기술 관행 특히 기술개발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경우
- 안전과 위생표준에 필요한 어구 및 기술 채택을 위한 보조금
- 어획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보조금(감척, 면허매입, 전직교육)

허용보조금 전제조건 및 통제

- 수출 및 수입대체 보조금(SCM Article 3).
- IUU 어업과 관련된 경우
- 심각한 부정적인 무역효과(serious adverse trade effects)
- WTO 사전통보
- 어획능력 관리 계획이 FAO의 국제어획능력 관리 행동계획에 적합
- 허용보조금의 수혜자는 국내외 모든 법령, 통보의무의 준수
- 특별보고와 주기적인 검토

어획능력 감소 보조금

- 협의 해석
- 시한설정
- 감척어선 수출과 같은 어획능력 수출 금지
- 특별 감시 및 평가
- 어획능력의 실질적인 증가시 의무적 폐지
- 능력관리계획 충족
- 일몰조항(sunset clause)

기타 모든 보조금 :조치가능

- 금지 및 허용이 아닌 모든 보조금 조치가능
 - > 금지보조금이 아닌 모든 긴급 구제금
 - > 금지 또는 허용 보조금이 아닌 모든 보조금

수산보조금 : 현행 SCM 협정의 조치가능 보조금 적용 어려움



수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SCM 개정 필요

부정적 효과 개념 명확화
“Dark amber”의 개념부활

부정적 효과 개념 명확화

- SCM의 심각한 손상(serious prejudice) 개념 명확화
 - > 상대적인 어획량의 변화
 - > 양륙가격 인하
 - > 특정경제지표로 계산된 어획능력 증가
-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개념 명확화
 - > 생산비용 등의 고려 허용
 - > 수입량 또는 수입가격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: 선단 이나 기업의 수익
- 무효화 또는 침해에 대한 반증을 허용하는 추정 인정
 - > GATT 관세 양허 품목의 판매 또는 생산에 관계되는 모든 기업, 선단에 보조금 지급하는 모든 경우
- 침해 보조금의 철회의무
 - > 부정적 효과 : 부정적 효과의 제거 및 의무적 철회

“Dark amber” 의 개념정립

- 조치가능 보조금중에서
 - > 명백한 위험 또는 관리가 안되는(undermanaged) 상태에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
 - > 개도국에 불리한 보조금
 - > 종가세 기준 5%를 초과하는 보조금
 - > 운영손실을 보전하는 보조금

입증책임의 전환



용이한 조치

한국의 보조금 현황 및 협상동향



한국의 WTO 통보 보조금

보조금의 종류	지원형태	금액(백만원)
원양어업개발	대출	1,900
영어자금대출	대출	40
수산물가공	대출, 보조	3,200
양식업 개발	대출, 보조	1,600
원양어선 건조 지방세 감면	취득세 등 감면 2003년 시한	9.8
총 계		6,749.8

OECD 통보 보조금

보조금의 종류	1999	2000	2001
직접지불	2,413	380	2,602
■어선감축	2,369	333	2,545
■어민 보험 지원	44	47	57
비용절감 이전	679	768	728
■어선건조 및 현대화	30	87	24
■양식개발	57	48	182
■기타 비용절감이전	592	633	522
일반서비스	2,339	2,425	2,170
■자원개발	560	549	310
■수산업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	1,725	1,820	1,772
■연구 및 교육	54	56	88
합 계 (억 원)	5,431	3,573	5,500

예산항목	2004예산	2005예산	비율
	8,599	8,642	100.0%
◆ 생산기반조성	5,362	5,199	60.2%
○ 어촌어항건설	2,005	2,115	24.5%
○ 수협경영지원	320	260	3.0%
○ 어업지도.단속	426	446	5.2%
○ 정책자금지원	1,391	1,329	15.4%
○ 수산자원관리	899	802	9.3%
○ 자율관리사업 등	321	247	2.9%
◆ 유통개선	588	362	4.2%
○ 유통시설지원	534	276	3.2%
○ 위생안전, 수출지원 등	54	86	1.0%
◆ 기술개발.인력양성	315	360	4.2%
○ 수산기술개발	261	288	3.3%
○ 기술관리	50	68	0.8%
○ 어업인교육	4	4	0.0%
◆ 부담경감.소득보전	2,334	2,721	31.5%
○ 어업인정책보험지원	219	209	2.4%
○ 어업구조조정	314	345	4.0%
○ 이차보전	869	1,113	12.9%
○ 어촌개발	306	324	3.7%
○ 친환경사료직불제	50	100	1.2%

한국의 면세유 제도

- 근거 규정
 - >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
- 면세 대상
 - > 어업, 농업, 임업 및 연안여객선박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류
- 공급기한
 - > '05. 6. 30까지 석유류에 부과된 교통세 등 완전 면제
 - > '05. 7. 1부터 '05. 12월말까지 공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75% 감면
- 면세액 : 경유의 경우 391.76원/liter, 휘발유의 경우 743.9원
 - > 염가율(시중가 대비 면세액 비율, '04 기준)은 각각 58%, 70%임
-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
 - > 교통세, 주행세, 교육세, 부가가치세, 특별 소비세 부과
 - ✓ 경유, 휘발유에는 교통세, 주행세, 교육세, 부가세 부과
 - ✓ 등유, 부탄, 프로판, 중유에는 교육, 특수세, 부가세 부과
- 어업용 유류 면세액 전체 수산보조금의 00% 차지(00/000 백억원)

협상동향

- 현재까지 19차례의 규범협상 개최
 - > 27건의 수산보조금 관련 제안서 제출
 - > 국가별 제안서 제출 건수
 - ✓ 뉴질랜드 6, 일본 6, 한국 5, 미국 4, 칠레 4
 - ✓ Friends of Fish
 - 뉴질랜드, 아이슬란드, 호주, 칠레, 에콰도르, 페루, 필리핀, 미국
 - ✓ Battle of FF vs. FL



2004년 협상동향

- Doha Work Programme(2004.8)
 - takes note of the reports to the TNC by the Negotiating Group on Rules
- TN/RL/9
 - a shift in the debate from the issue of
 - *whether* there is a need for specific disciplines in the sector
 - to the question of the *nature* and *extent* of any such disciplines.
- 급속한 진전
-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

2005년 협상동향

- '05.2, 17차 협상
 - 한국주도의 3국 공동제안서(W/172) 제출
 - ✓ 포괄적 금지논의 중단 → 개별보조금 성격 등 논의
- '05.4, 18차 협상
 - 브라질의 개도국 특혜 제안(W/176)
 - ✓ 금지대상 보조금중 개도국에게는 한시적이거나 폭넓게 허용
 - E.C의 보조금 투명성 확보방안 제안(W/178)
 - ✓ WTO 통제방안: 통보되지 않은 보조금의 금지
 - ✓ 국내 통제방안: 국내법에 명시적으로 반영(홈페이지 공개)

전 망

- > 개별보조금 성격, 금지/허용 분류기준, 소규모 영세어업 정의 등 구체적 사안 위주로 협상전개 예상
- > FFG는 금지보조금 확대, 허용보조금 부인, 투명성 제고 등 강력 주장 예상
- > 협상타결시 국내 수산보조금 일부/전부 철폐 불가피

대 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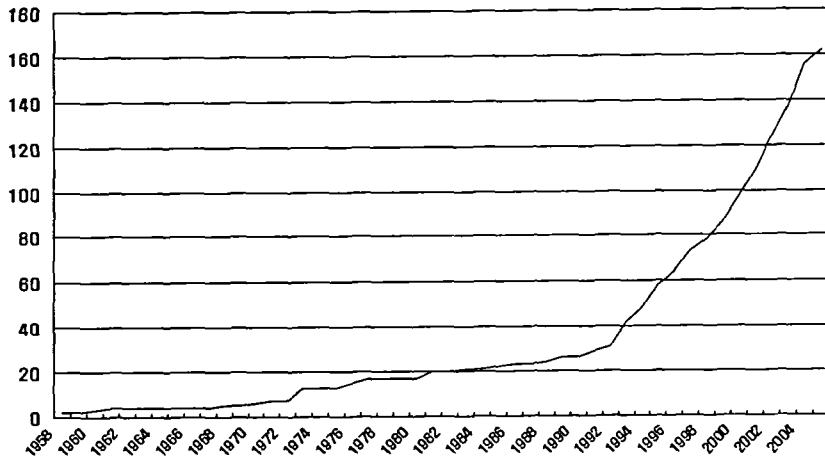
- 협상대책
 - > 주변국 공조
 - ✓ 일본, EU, 캐나다, 미국
 - > SCM 전체차원 접근
 - > IGO, NGO
 - > 구체적인 입장 견지(금지, 허용)
- 국내대책
 - > 수산업 구조조정 기회
 - > 사전적 제도 정비
 - > 특정성 배제 정책, 종합화, 지역화, 소규모화(APEC)
 - > 홍보

FTA

지역무역협정의 근거

- 지역무역협정은 GATT 제24조, GATS 제5조 및 권능부여조항 (Enabling Clause)에 근거하여 체결
- GATT 제24조와 권능부여조항은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포함한 협정에 적용되고, 서비스부문 자유화에 대한 협정은 GATS 제5조의 적용대상
상품무역 자유화 내용을 포함한 협정은 자유무역협정, 관세동맹, 특혜무역협정 중 하나의 형태로 규정

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세계적 추세



[지역무역협정의 발효 개수]

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세계적 추세

기간	갯수	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의 예
1948 ~ 1960	5	EC(유럽공동체; 발효연도-1957) EFTA(유럽자유무역연합; 1959) CACM(중미공동시장; 1961)
1970 ~ 1979	12	영국, 덴마크, 아일랜드의 EC 가입(1973) CARICOM(중남미카리브해공동시장; 1973) 방콕협정(인도, 방글라데시, 한국 등; 1976)
1980 ~ 1989	10	CER(호주-뉴질랜드 FTA; 1983) U.S.-Israel FTA(1985) 스페인, 포르투갈의 EC 가입(1986)
1990 ~ 1999	61	MERCOSUR(남미공동시장; 1991) AFTA(아세안자유무역지대; 1992) NAFTA(북미자유무역협정; 1994) 불가리아, 루마니아 등 동구권 국가의 EC와 EFTA 가입
2000 ~ 2005	74	EC-멕시코 FTA(2000) EC-칠레 FTA(2003) 동구권 10개국으로의 EU 확대(2004) 일본-싱가포르 FTA(2002) 한국-칠레 FTA(2004) 미국-호주 FTA(2005)
총 계	162	

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세계적 추세

- 2000년 이후 지역주의는 1990년대의 세계적인 확대 추세를 넘어 폭발적인 증가세 시현
- 지난 5년 동안 무려 74개의 협정이 추가로 발효됨으로써 2005년 1월 현재 총 162개의 협정 발효 중
- EC와 EFTA가 가장 활발하게 지역주의 확대
- 동아시아에서는 일본-싱가포르간 협정(EPA)가 2002년 발효되었고, 한국과 칠레는 양국간 FTA를 2004년 공식발효.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의 조기자유화조치(EHP)를 2003년 발효시켰고, 독립적인 관세구역인 홍콩 및 마카오와의 협정 2004년 발효
- 미주지역에서는 미국, 칠레, 멕시코 등이 활발하게 지역주의 추진
- 미국은 요르단(2001), 싱가포르(2004), 칠레(2004), 호주(2005)와 FTA를 체결하였고, 멕시코는 EC(2000), EFTA(2001) 등과의 FTA를, 칠레는 EC(2003), 미국(2004), EFTA(2004) 등과의 FTA 협정 발효

확대·심화의 원인

- 자유무역협정은 개별국들의 이해를 충족시키는데 용이
- 다자간 무역자유화 지연
- “뜻이 통하는(likely-minded)” 국가간 무역자유화에 관심
- FTA 체결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는 경제적 이익의 확보
- EC, 미국 등 선진국의 지역주의 참여
- 세계화(경제통합)에 능동적 참여

최근 체결된 FTA의 특징과 영향

- 과거의 지역무역협정은 주로 상품분야 시장개방에 중점
- 최근에 체결되는 지역무역협정은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 완화뿐만 아니라, 서비스와 투자분야 자유화를 기본적인 사항으로 포함
- 또한 기술규정, 위생 및 검역, 지적재산권, 정부조달을 포함하고 있으며,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구비
- 더 나아가 일부 협정은 아직 WTO도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경쟁정책, 환경, 노동, 무역원활화, 전자상거래,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

우리의 FTA 추진 방향 및 전략

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

- FTA 추진 전략
 - 단계적, 순차적 추진과 동시다발적 추진
- 동시다발적 FTA 추진의 필요성
 - FTA 세계적 확산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
 -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확보
 - 동시다발적 협상은 FTA의 부정적 효과 상쇄
 - 협상 모멘텀 유지 및 전문성 제고

내용면에서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지향

- 우리나라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 뿐만 아니라, 서비스, 투자, 정부조달, 지식재산권, 기술표준, 상호인정, 경쟁, 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FTA 지향

FTA 추진 인프라

- 2003년 9월, FTA 추진 로드맵을 작성, FTA 추진 기본전략을 결정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인 「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」 제정

FTA 추진 로드맵 (2003.9월 제정, 2004.5월 보완)

- ◆ FTA 추진 대상국 선정기준
 - ① 경제적 타당성 ② 정치·외교적 합의
 - ③ 우리나라와의 FTA에 적극적인 국가
 - ④ 거대·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
- ◆ FTA 추진 대상국
 - (단기적으로 추진할 FTA)
 - ① 일본 ② 싱가포르 ③ ASEAN ④ EFTA ⑤ 멕시코
 - ⑥ 캐나다 ⑦ 인도
 - (중·장기적으로 추진할 FTA)
 - ① 미국, EU, 중국 등 거대경제권
 - ② 한·중·일 FTA
 - ③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희망해온 국가
(이스라엘, 페루, 파나마, 뉴질랜드, 호주)

FTA 추진현황

- 완료: 칠레('02), 싱가포르('04.11, 실질적 타결)
- 협상중: 일본('05), ASEAN('06), EFTA('05)
- 공동연구: 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인도, Mercosur
- 추진검토: 중국, 러시아

한-칠레 FTA

- 한.칠레 FTA는 전문 및 본문 21개장 215조,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, 양국 정부는 동 FTA의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여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6.2%, 칠레는 96.5%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각각 10년 이내에 철폐할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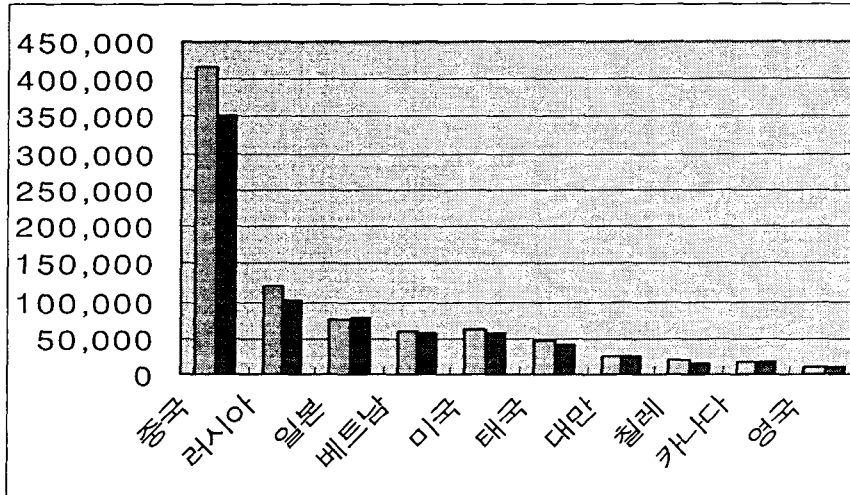
[한국측 양허안 (HS 10단위 기준, %)]

양허 카테고리	전 체	공산품	농산물	임산물	수산물	주요품목
즉시 철폐	9,740 (87.2)	9,101 (99.9)	224 (15.6)	138 (58.2)	277 (69.5)	배합사료, 종우, 양모, 커피
5년 철폐	701 (6.3)	-	545 (38.1)	70 (29.5)	86 (21.5)	고사리, 장미, 두부, 포도주, 아몬드
7년 철폐	41 (0.4)	1 (0.01)	40 (2.8)	-	-	과실주수, 과실조제품, 가금류고기, 수프, 감자
9년 철폐	1(0.01)	-	1(0.07)	-	-	기타과일주스
10년 철폐	262 (2.3)	-	197 (13.8)	29 (12.3)	36 (9.0)	토마토, 돼지고기, 오이, 키위
계절관세 ¹⁾	1(0.01)	-	1(0.07)	-	-	포도
16년 철폐 ²⁾	12(0.1)	-	12(0.8)	-	-	조제분유, 혼합주스
TRQ+DDA 이후논의 ³⁾	18 (0.15)	-	18 (1.26)	-	-	쇠고기, 닭고기, 맨드린
DDA이후 논의	373 (3.3)	-	373 (26.0)	-	-	마늘, 양파, 고추, 낙농제품
제 외	21(0.2)	-	21(1.5)	-	-	쌀, 사과, 배
합 계	11,170	9,102	1,432	237	399	

1) 일정기간(11월-4월)에만 관세철폐(10년 균등), 2) 6년 거치후 10년간 관세 철폐

3) 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, DDA 타결 후 논의

주요수산물 수입국('05.5)



주요품목

	2005.5 (천불)	2004.5 (천불)	전년대비 증감
어분	8,422	6,490	30
홍어	3,843	4,690	- 18
연어	1,866	1,144	63
기타연어	1,348	502	169
오징어	134	107	25
소계	15,613	12,933	21
합계	18,170	13,274	37

평 가

- 칠레 수입량: 국가별 순위에서 1단계 증가
 - ▷ '04 : 9위, '05 : 8위
- 내용면에서 긍정적
 - ▷ 어분과 연어 수입의 증가
 - ✓ 칠레산 어분의 품질이 뛰어나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선 전환 효과 발생
 - ✓ 국내 어분 시장 점유율 추이
 - 칠레산 '03년 60% → '04년 70%
 - ✓ 연어의 경우 주 수입국인 노르웨이산의 수입단가 상승 및 칠레의 대량 양식생산 성공에 기인 훈제, 초밥용, 구이용으로 주로 수입

산업보완대책 사례

국내 사례

- 국내 산업보완대책으로는 UR 타결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개선을 위하여 45조원을 투입했던 “농어촌구조개선사업”
- 10년이 지난 지금 동 제도의 실적을 평가해 볼 때 미흡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. 이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개선하기 보다는 정부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킴으로써 오히려 산업경쟁력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
- 또한 2004년초 한-칠레 FTA 비준과정에서 마련된 농수산업지원대책
- FTA 이행특별법을 제정하여 향후 7년간 1조5천억원(지방비 포함)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, 농어촌 특별세법,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(부채경감법),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촉진특별법(농어촌복지법)을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함
- 또한 장기적인 농업, 농촌대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한다는 종합대책을 발표

산업보완대책 사례

해외 사례

- 캐나다, 호주, 싱가포르, EU, 멕시코 등 대다수의 국가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포괄적인 산업피해보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.
- 다만, 미국의 경우, 예외적으로 포괄적인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
- 미국은 1962년 Trade Expansion Act를 통해 이를 처음 도입하였으며, NAFTA 발효에 따라 NAFTA-TAA를 별도로 운영하다가 2002년 제반법령을 통합한 무역조정지원개혁법(Trade Adjustment Assistance Reform Acts)을 입안.
- 동 제도는 산업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는 노동자에 대한 교육/훈련과 피해 산업/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규정. 다만, 동 제도의 핵심은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이며, 산업지원은 그 규모가 극히 제한적임.

중
합

협상대책에 대한 고찰

- 보조금 대책
 - ▷ 수산보조금 금지범위 최소화
 - ▷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
- 관세
 - ▷ 일본, 대만등과 공동으로 민감수산물의 허용을 지속적으로 제기 (공식내 반영)
 - ▷ 모델리티 협상에서 신축성 반영 추진
 - ▷ 관세이외의 보호무역 가능여부 검토

결어

- 협상
 - ▷ 지속성, 전문성
 - ▷ 제도연구
- 대책(3P)
 - ▷ Prepare the Worst Results
 - ✓ 무세화
 - ✓ 수산보조금의 전면 금지
 - ▷ Prior Measures
 - ▷ PR